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5. 12. 29(화) 평창군수(경제체육과장)
- 회부일자 : 2016. 01. 27(수)
- 상정일자 : 2016. 02. 01(월) 제21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체육진흥 시책추진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체육진흥 시책추진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10조의 2는 전문체육 지원
 - 안 제10조의 3은 생활체육 지원
 - 안 제10조의 4는 장애인체육 지원
 - 안 제10조의 5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보고·검사
 - 안 제13조의 2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2호) 중 "군의"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 중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다음에 "제2장의2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를 삽입한다.

제2장의2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문체육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

제10조의3(생활체육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제10조의4(장애인체육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 체육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제10조의5(보고·검사) ① 군수는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6(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